

프랭클린 템플턴 인베스트먼트 펀즈 통합 정관

(2013년 1월 11일 변경본)

(Consolidated Articles of Franklin Templeton Investment Funds)

제1조 회사는 모든 청약자와 차후 주주가 되는 사람에게 “société anonyme” 형태의 개방형 증권 투자회사 (“société d’investissement à capital variable”)의 자격을 갖추고 “FRANKLIN TEMPLETON INVESTMENT FUNDS”(“회사”)의 명의로 존재한다.

제2조 회사는 무기한의 존속기간을 가지고 설립되었다. 회사의 해산은 본 정관의 제29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그렇지 않은 경우 본 정관 제28조에 제시된 바에 따름)본 정관(“본 정관”) 개정에 필요한 절차에 따라 채택된 주주들의 결의로 이루어진다.

제3조 회사의 유일한 목표는 투자위험을 분산하고 포트폴리오의 운용의 결과를 주주들에게 주기 위해 수시로 개정되는 2010년 12월 17일 집합투자에 관한 법 (“2010년 법”) 제1장에서 허용하는 유가증권 및 기타자산에 투자하는 것이다.

회사는 회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투자 신탁업에 관한 2010년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이행할 수 있다.

제4조 회사의 사무소는 룩셈부르크 대공국 룩셈부르크 시에 등록되어 있다. 룩셈부르크 법 및 규정에서 명시한 조건에 의해 허용되는 경우 회사의 이사회(“이사회”)는 회사의 등록 사무소를 룩셈부르크 대공국내의 다른 장소로 이전할 수 있다. 이사회 결정에 따라 룩셈부르크 대공국이나 해외에 전액 출자한 자회사나 지점 또는 다른 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다.

제5조 회사의 자본금은 항상 무액면 주식으로 표시되며, 본 정관 제23조에 따라 결정된 회사의 총 순자산과 항상 일치해야 한다. 회사의 최소 자본금은 2010년 법에 명시된 최소금액에 상응하는 미달러화(“미달러화”)이다.

(번역 중략)

이사회 결의로 추가 발행된 주식은 2010년 법 제181조에서 의미하는 다른 하위펀드(각각 “하위펀드,” 종합하여 “하위펀드들”이라 함)에서 발행될 수 있으며, 각 하위펀드의 주식의 발행대금은 본 정관 제3조에 따라 지역, 산업부문 또는 통화지역, 또는 특정 종류의 주식과 채권 등에 상응하거나 각 하위펀드에 대해 이사회가 수시로 정하는 특정 분배 정책 또는 보수 및 수수료 구조 또는 기타 특성에 부합하는 양도가능 증권 및 기타 허용된 자산에 투자된다. 또한 이사회 결의로 각 하위펀드 내에서 둘 이상의 주식클래스(각 “주식클래스,” 종합하여 “주식클래스들”이라 함)를 만들 수 있으며, 주식클래스의 자산은 일반적으로 해당 하위펀드의 특정 투자방침에 따라 동일하게 투자되지만, 각 주식클래스 별로 보수 및 수수료체계, 분배방침, 헷징방침 또는 기타 다른 특성들이 각각 다르게 적용된다.

(번역 중략)

본 정관에서 지칭하는 “하위펀드”는 문맥 상 달리 요구하지 않는 이상 또한 “주식클래스”를 의미한다. 회사의 자본금을 산출하기 위해서 각 하위펀드에 귀속되는 순자산은 미달러화로 환산하며(미달러화로 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회사의 자본금은 모든 하위펀드들의 순자산을 총 합계한 금액이 된다. 회사는 연결 장부를 미달러화로 작성한다.

제6조 회사는 오직 기명으로만 신주를 발행하며 무기명 주식은 더 이상 발행하지 않는다.

(번역중략)

기명주식의 소유권은 회사 주주명부에 기입으로 증명되며 주주에게 주식소유에 대한 확인서를 교부한다. 그러나 이사회는 회사의 투자설명서(“투자설명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주식증서 발행을 결정할 수 있다.

(번역중략)

제8조 회사의 의견으로 주식의 보유가 회사 또는 그 주주에게 위해가 되거나 해당 법 또는 규

정(룩셈부르크법 또는 외국법)의 위반을 야기하거나 또는 회사나 주주가 부담하거나 노출되지 않았을 책임(특히 규제 또는 조세책임 및 해외계좌납세의무법(FATCA) 요건의 위반에서 파생될 수 있는 기타 조세 책임을 포함)이나 기타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여하한 미국인 (이하 정의) 및/또는 여하한 사람, 회사 또는 법인의 주식 소유를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다. 해당 사람, 회사 또는 법인(미국인 및/또는 FATCA 요건 위반인을 포함)을 본 정관에서 “주식소유 금지인”이라 한다.

(번역중략)

제9조 정기적으로 소집되는 회사의 주주총회는 회사의 모든 주주를 대표한다. 총회의 결의는 주주가 보유하는 하위펀드 주식에 관계없이 회사 모든 주주에게 효력을 갖는다. 총회는 회사의 이러한 주주집회는 회사의 운영에 관하여 행위를 지시, 수행 또는 비준하는 광대한 권한을 가진다.

제10조 정기주주총회는 룩셈부르크 대공국 법률에 의거 등록사무소 혹은 주주총회 통지서에 명시된 룩셈부르크 내 다른 장소에서 매년 11월 30일 오후 2시30분에 개최된다(룩셈부르크 시간). 만약 이날이 룩셈부르크의 은행영업일이 아니면 정기주주총회는 그 해 11월 30일 바로 다음 룩셈부르크의 은행영업일 날 개최된다. 이사회가 예외적인 상황이라고 절대적인 최종판단을 하는 경우는 정기주주총회를 해외에서 개최할 수 있다.

(번역중략)

제13조 회사는 최소한 3명 이상으로 구성된 이사회에 의해 운영된다. 이사회는 각 “이사” 통칭하여 “이사들”이라 함)은 회사의 주주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

이사는 정기주주총회에서 주주들에 의해 선출되며, 임기는 다음 정기주주총회에서 자격 있는 후임이 선출될 때까지이다. 그러나 회사 주주가 채택하는 결의에 의해 이사는 언제든지 해임 및/또는 사유 없이 교체될 수 있다.

사망, 퇴임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이사가 공석이 되면 잔여 이사들의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다음 정기 주주총회 때까지의 공석을 채울 새로운 이사를 선출할 수 있다.

(번역중략)

제16조 이사회는 리스크를 분산하기 위해 각 하위펀드를 위한 회사 및 투자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회사의 경영과 일상 업무 절차를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사회는 또한 2010년 법 제1장에 따라 다음과 관련하여 이를 포함하지만 제한되지 않는 회사의 투자에 수시로 적용되는 제한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가) 회사의 차입 및 회사 자산의 지당

(나) 주식의 형태 또는 범주에 회사가 투자하거나 획득할 수 있는 자산의 최대 비율

(번역중략)

제21조 이하에서 자세히 규정되지만 회사는 룩셈부르크 대공국 법률이 정하는 제한 내에서 회사 주식을 환매하는 권한을 갖는다.

(번역중략)

제22조 매입, 판매 및 전환가격을 산출하기 위해 주식의 순자산가치는 각 하위펀드 주식에 따라 회사에 의해 산출되며, 이사회는 규정에 따라 한 달에 두 번 이상 실시하도록 정한다(투자설명서에서 추가로 기재되는 순자산가치를 산출하는 때 일시를 본 정관에서 “평가일”이라 한다).

(번역중략)

제25조 회사의 회계연도는 7월 1일에 개시되고 익년 6월 30일에 종료된다.

회사의 계정은 미달러화로 표기된다. 제5조에서 설명한 다른 하위펀드가 존재하고, 그리고 그 유형 하위펀드의 계정이 다른 화폐단위로 표시되어 있으면, 계정을 미달러화로 환산한 후 합하여 회사회계를 결정한다.

(번역중략)

제26조 연간 수익의 지출과 다른 기타 분배는 이사회에 제안에 따라 정기 주주총회에서 결정된다.

(번역중략)

제27조 회사는 2010년 법에 의거 운용회사를 선정할 수 있다.

(번역중략)

제28조 회사가 해산하는 경우는 청산작업을 주주총회에서 지명하는 하나 이상의 청산인(사람 또는 법적 주체)에 의해 이루어지며 주주총회는 청산인의 권한과 보상방법을 결정한다. 청산인은 각 하위펀드에 해당하는 순 청산 수익금을 해당 하위펀드 주주의 지분에 따라 주식보유자에게 배분한다.

(번역중략)

제29조 본 정관은 주주총회에서 변경할 수 있으며, 룩셈부르크 대공국 법률에서 정하는 의사정족수 및 의결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다른 하위펀드 주식의 주주 권한과 비교하여 여하한 하위펀드 주식의 주주 권한에 영향을 미치는 정관의 개정은 각 관련 하위펀드에 관련하여 상기 의사정족수 및 과반수 요건의 적용을 받는다.

제30조 본 정관의 적용을 받지 않는 모든 사항은 2010년 법 및 수시로 개정되는 상업회사에 관한 1915년 8월 10일자 법 조항에 따라 결정된다.